

바이오 벤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 유전자 치료제 신약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분쟁해결 방안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



유전자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서 중의 중재조항 - 제12조 2항

제8조(상용화 결과물의 귀속)

“갑”과 “을”은 “국내 상용화” 과정에서 “VM202”의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발명에 의하여 타 기술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산업 재산을 획득할 경우에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그 산업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국내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PCT)한다. 이때 출원,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갑”과 “을”이 각각 50%:50%의 비율로 부담한다.

제12조(해석)

1.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국내 상용화 연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계약 이전에 양자간에 발생한 모든 구두합의, 계약서 및 문서에 우선한다.
2.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의 해석상 계약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석되고 최종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중재법 규정 - 중재합의 대상에 대한 민사소송 - 부적법, 소각하 대상

중재법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개정 2016. 5. 29.>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5. 29.>

중재법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

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

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

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원고회사 라이선서의 주장 요지

(1)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내용 - 라이선스 계약 대상 특허권, 특허출원의 지분 1/2

명의이전청구, 연구개발 결과물 마스터세포은행 (Master Cell Bank, MCB) + 제조용

세포은행 (Working Cell bank, WCB)의 1/2 지분 소유권 확인청구, 연구개발 결과

데이터 및 자료의 제공(인도) 청구

(2) 중재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장

피고회사 라이선서의 주장 요지

(1) 계약관련 모든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민사소송은

중재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 각하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 중재합의 위반 소로 부적법함 - 소 각하 판결

판단기준 법리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76573 판결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참조).

대법원 판결 사건의 원심판결 요지 - 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제111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재인이 일정한 순서(1. 계약문서 표현의 문자상 의미, 2. 계약문서 전체 규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나타나는 계약당사자의 의도, 3. 중재에 진행되는 시점에 유효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제 조건을 해석하거나 당사자의 권리·의무 또는 책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의 기본규정인 제111조 자체에서 이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관련 법률의 해석도 중재의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더욱이 제17조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문서의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 등이 있거

나 그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충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 '제111조의 중재판정이 달리 판단할 때까지' 발주자의 해석 또는 보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17조 역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도 중재의 대상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의 중재조항은 그 도급계약서의 문리해석상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관한 분쟁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② 어떤 법률관계상의 분쟁에서 사실문제, 계약해석문제, 법률문제는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의 확정은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한 요소일 뿐이어서 사실관계의 확정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중재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만 판정을 하도록 한다면 결국 법원이 중재판정을 전제로 다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어서, 이는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법의 목적과 중재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중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중재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③ 중재란 본래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중재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권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법률상의 분쟁을 의미하는 점, 중재의 경우 중재인은 분쟁의 대상에 대한 사실문제, 법률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는 점에서 사실문제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중재감정과 구별되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사실관계'만이 중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쉽게 상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도급 계약상 중재조항은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대한 분쟁도 중재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단요지 -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중재 관련 조항들이 중재합의의 대상을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중재 관련 조항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분쟁사안에서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유

다.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에서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중재법에 따른 유효한 중재합의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에 의한 중재합의를 '이 사건 중재합의'라 한다).

2)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중재합의를 통하여 중재에 회부할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해석이 필연적으로 선행되므로, 계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합의의 문언이 '이 사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만을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중재합의가 그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중재합의로써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옳다.

3) 설령 이 사건 중재합의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이 사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사건 계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계약 제8조의 '공동명의' 내지 '제반비용의 50:50 비용 부담' 등의 문언으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1, 2 각 기재 발명들에 관한 권리 중 2분의 1 지분의 이전 의무'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이 명백하게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가 별지1, 2 각 기재 발명 전부에 관한 권리를 원고와 공유하여야 한다는 점'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해야 할 지분권은 2분의 1이라는 점'이 원고가 청구권원으로 제시한 이 사건 계약 제8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탐구함이 없이 그 문언 자체로부터 곧바로 도출되거나 그와 같이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문제는 '이 사건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봄이 옳다.

②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의 문언('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을 제공한다')으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3, 4 각 기재 자료들의 제공 의무'가 명백하게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 자료들이 모두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이 제공 대상으로 규정하는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

③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서 VM202의 국내 상용화 과정에서 생산된 MCB 및 WCB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 또한 이 사건 계약 제4조 또는 제8조의 각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MCB 및 WCB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문제 역시 '이 사건 계약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사건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④ 이렇듯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하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이 사건 계약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사건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위 사항들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고 있다.

4) 결국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고, 이에 대해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부적법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

계약분쟁, 국제계약, 기업법무, 기술법무, 손해배상, Claim, License, 중재합의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